- 목적	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
	▶ 고려 요소 범위	▶ 핵심요소
- 고려 요소	- 폐기물: 쓰레기, 연소재(燃燒滓), 오니(汚泥), 폐유(廢油), 폐산(廢酸),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시체(死體)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 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- 생활폐기물: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- 사업장폐기물: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 또는 「소음・진 동 관리법」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・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- 지정폐기물: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・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(醫療廢棄物) 등 인체에 위해(危害)를 줄 수 있는 해로 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- 의료폐기물: 보건・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・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(摘出物), 실험 동물의 시체 등 보건・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	- 작년대비 폐기물량의 증감 - 폐기물 관련 중·장기계 획